

세무회계저널
제7권 제3호 2006년 9월 pp.217~239
한국세무학회

공인회계사유형과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른 세무의사결정의 차이에 대한 연구*

심태섭**

<요 약>

본 연구는 공인회계사유형과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적인 사례를 이용하여, Big 4 회계법인과 서울지역 개인감사반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우선,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었다. 즉, 개인감사반의 응답자가 Big 4 회계법인의 응답자에 비하여 감사대상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의사결정을 하였고, 일부 사례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개인감사반 응답자가 보다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개인감사반 소속 회계사나 정책당국은 이러한 성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독립변수인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응답자의 세무의사결정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와 일부 세무자문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 최근 미국에서의 조치를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도입하는 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세무의사결정,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유형, 비감사서비스

* 본 연구는 2005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을 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tsshim@dankook.ac.kr, 02-799-1403

I. 서론

현재 공인회계사인 회계감사인이 세무조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인회계사가 한 업체의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1)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유형과 (2)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여부에 따라, 그들의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는 그 소속에 따라 대형회계법인(Big 4 회계법인),¹⁾ 중소형회계법인(Non-Big 4 회계법인)과 개인감사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공인회계사의 유형별로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Big 4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감사부서와 세무부서를 분리하고,²⁾ 세무업무도 상위 직급자에 의한 검토절차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세무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실무담당회계사의 오류를 줄임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세무업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³⁾ 이에 비하여 Non-Big 4 회계법인이나 개인감사반의 경우는 동일한 팀 혹은 개인이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상급자나 다른 사람의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세무조정실무경험이 상대적으로 많기에, 대형회계법인과 같은 검토절차가 없는 것으로 인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한 고객이라든가 고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인회계사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동일한 규모의 고객인 경우 상대적으로 Non-Big 4 회계법인이나 개인감사반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객의 편에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세무의사결정에서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그들이 수행하는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인회계사가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들이 수행하는 세무의사결정의 결과가 다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을 동일한 감사인이 수행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수수료가 세무수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세무대리업무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업무의 수행여부에 따라 고객의 중요성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고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로 인하여 감사업무의 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⁴⁾ 이에 따라 회계감사수행 여부

1)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구분에 따라 삼일, 삼정, 안건 그리고 한영회계법인을 대형회계법인(Big 4)으로 하였다.

2) 일부 회계법인의 경우는 세무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3) 회계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Big 4 회계법인이 정형화된 업무지침, 철저한 검토 절차 등으로 인하여 다른 형태의 회계감사인보다 회계감사의 질이 높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Louis 2005).

4) Roberts(1998)가 제시한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모형에서는 고객의 중요성이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에 포함되어 있다.

가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같은 공인회계사가 동시에 수행한다면,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는 고객의 입장을 더욱 많이 고려하여 세무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이 차이가 있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의 본 연구는 우선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존연구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세무대리인 의사결정에 대한 기존연구는 세무조사확률, 벌금의 크기 등과 같은 세무당국이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의 유형과 회계감사업무의 수행여부와 같이 세무대리인 측면의 변수가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기에, 본 연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공인회계사가 일부 공격적인 세무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세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기업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 PCAOB)에서는 일부의 공격적인 세무업무를 공인회계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 하고 있다.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세무대리인의 공격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국세청 2006).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가 동일 업체에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 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공인회계사의 일부 공격적인 세무업무를 제공을 제한하려는 정책당국의 정책입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인회계사유형과 회계감사의 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Big 4 회계법인과 개인감사반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실험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결과,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서는 개인감사반 소속의 응답자가 Big 4 회계법인의 응답자보다 더 공격적인 세무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회계감사수행여부는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연구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이어서 자료수집방법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근거로 연구결과와 향후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5) PCAOB에서는 회계감사인인 공격적인 세금회피방법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와 재무제표 마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게 개인적인 세금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고 있다(PCAOB 2005). 현재 PCAOB의 이러한 규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 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II. 기존연구의 검토와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공인회계사유형과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본 후,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1.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존연구

본 연구는 넓게 보아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이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개인적인 특성(경험, 교육수준, 성별 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세무대리인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Carnes et al. 1006).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심리적인 요인(지식, 문제해결 능력, 태도 등)과 외부요인(세무당국의 제재, 의뢰인의 요구)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⁷⁾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인 공인회계사의 유형이나 회계감사수행여부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외국의 연구(Ayres et al. 1989; Carnes et al. 1996)에서는 공인회계사와 비공인회계사간의 의사결정의 차이는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와 같이 공인회계사의 유형별로 의사결정이 차이가 있는 가는 연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여러 규제와 관련된 연구로 이를 파악한 기존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파악되지 않은 공인회계사유형과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세무의사결정의 차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의 연구가설

본 연구는 공인회계사의 유형과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대리의사결정의 차이를 알기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6)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 Ayres et al.(1989)는 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와 자격이 없는 자의 의사결정의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Carnes et al. (1996)은 세무대리인의 경력, 교육수준, 위험선호태도, 성별, 회사형태 등이 세무대리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춘래·김종원(2002)은 세무대리인의 성별, 자격증소지여부, 실무경험정도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7) 이러한 주제에 대한 외국에서의 연구는 Roberts(1998)에 정리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환근(1998)은 벌금부과와 의뢰인의 중요성이, 심태섭(2004)에서 세무조사가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가.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른 세무의사결정의 차이

본 연구는 넓게 보아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연구이다. 세무대리인의 세무의사결정은 외부요인(대표적으로 세무조사확률, 벌금의 크기, 고객의 요구 등)이나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성격뿐만 아니라,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Cuccia(1995)는 세무대리인이 형태에 따라 세법과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공인회계사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이 차이가 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Cuccia(1995)의 연구는 단순한 인식차이에 대한 조사로써, 실제 세무대리인이 세무업무를 할 경우 세무대리인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그들의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공인회계사유형에 따라 그들이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1 :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다.

최근 Big 4 회계법인의 경우는 감사부와 세무부를 분리하여, 세무업무에 대하여도 회계감사와 유사하게 상급자에 의한 검토절차를 실시하여, 세무업무시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Big 4 회계법인 이외에 속한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동일한 감사인이 세무업무와 회계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며, 별도의 검토절차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동일한 규모의 고객인 경우 상대적으로 Big 4 회계법인에 비하여 Non-Big 4 회계법인이나 개인감사반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즉 Non-Big 4 회계법인이나 특히 개인감사반의 경우는 Big 4 회계법인에 비하여 고객의 수가 많지 않기에 동일한 규모의 고객을 Big 4 회계법인보다는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공인회계사유형에 따른 고객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하여 세무의사결정이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연구가설 1을 수립하였다.

나.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른 세무의사결정의 차이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이 달라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수수료가 세무수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세무업무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업무의 수행여부에 따라 고객의 중요성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세무조정만 담당한 고객보다는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고객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무조정수수료에 비하여 감사수수료가 비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 수행여부에 따라 고객의 중요성이 다르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회계감사업무의 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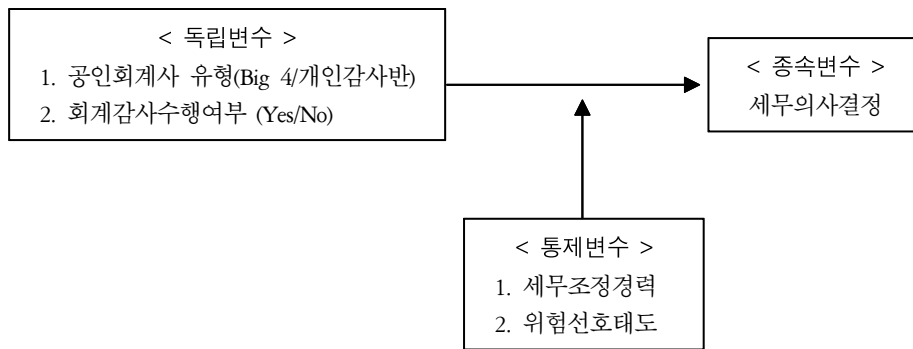
H2 : 회계감사의 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다.

최근 미국의 PCAOB에서 공인회계사에 의한 공격적인 세무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세무대리인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가설 2는 세정당국에게 동일한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와 세무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계속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 연구의 연구모형

앞에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두 가지(공인회계사 유형, 회계감사수행여부)이며, 종속변수는 세무의사결정이다. 그런데 세무의사결정에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 이외에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⁸⁾ 이러한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세무조정경력과 위험선호태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의 개요

본 연구는 실제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는 실험실 실험(laboratory experiment)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실험실 실험을 하기에

8)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Roberts(1998)에서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

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실험에 쓰일 가상의 사례를 설문지로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응답자

본 연구의 응답자로는 현재 회계법인이나 개인감사인으로서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를 그 유형별로 나누어, Big 4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와 개인감사반의 공인회계사를 응답자로 하였다. Non-Big 4 회계법인은 법인간에 업무처리형태나 운영방식 등이 다양하여 일관된 의사결정행태를 관찰하기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Non-Big 4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응답자에서 제외하였다.

3. 가상적 사례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이용하여, 이에 대하여 실제 세무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에게 응답을 하게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가상적 사례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제 세무대리인의 행동을 정확히 유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미국의 PCAOB에서 제한하려는 세무자문업무유형을 반영하여 세 가지 형태의 가상적인 상황을 사례로 마련하였다. PCAOB에서는 회계감사인이 세금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납세방법을 조언하여 주거나, 감사대상기업의 재무제표 마련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게 개인적인 세금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려하고 있다.⁹⁾ 다만 일상적인 세금환급이나 납세계획의 수립이나 조언에 대한 것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PCAOB 2005).¹⁰⁾

이러한 규정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의 세 가지 가상적인 사례를 마련하였다. 우선 첫 번째 사례(주한강)는 감사대상회사의 종업원이 관련된 상황으로, 이는 재무제표 준비와 거의 관련이 없는 직원이 관련된 세무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사례(주아름다움)는 대상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세무문제에 대한 자문으로, PCAOB에 의하면 재무제표의 준비와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한 세무자문업무는 금지된 비감사서비스에 포함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주한일철강)는 대상회사만이 관련된 세무조정사례로, PCAOB에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가상적인 사례를 작성하여, 각 사례에 대한 응답자의 의사결정결과를 측정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9)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도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서비스 제공시 취해야 할 조치(예를 들어, 감사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PCAOB와 같은 규정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10) 최근 미국의 한 대형회계법인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조세회피상품을 판매한 것이 미검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국세청에서도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한국회계기준위원회 e-kasb club news 267호 2005.12.24.).

각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와 관련된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사례의 내용은 부록의 <설문지> 참조).¹¹⁾

가. (주)한강 사례

이 사례는 재무제표의 작성과는 관련이 없는 종업원에 대한 세무문제이다. 즉 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세무문제이다. 소득세법 예규에서는 사용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만을 특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장학금을 추천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소득 46011-3619, 1995.9.22). 그러나 모든 장학금 수령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경우, 당 장학금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 사례는 장학금수령자 모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가상적인 상황에서, 이 장학금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대한 세무의사결정을 응답자가 하도록 하였다.

나. (주)아름다움 사례

이 사례는 재무제표의 준비와 관련이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문제이다. 즉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 회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거마비가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지급하는 거마비보다 많은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세무사례이다. 소득세법 예규에서는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46011-21395, 2000.12.6).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예규에서는 비상근임원이 급여이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 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소득46011-10195, 2001.3.8.). 이에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거마비는 세무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다. 이에 이 사례는 다른 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사외이사 거마비를 받은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가 판단하도록 하였다.

다. (주)한일철강 사례

이 사례는 해당회사만이 관련된 세무조정사례이다. 즉 법인사업자가 기계반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지의 여부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판단을 알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그러나 기계의 폐기가 아닌 기계반품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상적인 사례는 심태섭(2004)에서 사용한 사례를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심태섭(2004)에서 사용한 사례는 이환근(1998), 박춘래·김종원(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를 수정한 것이다.

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 사례와 같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기계반품에 따른 손실에 대해 응답자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를 알아보았다.

위의 3가지 사례에 대한 초안을 작성한 후 실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2명에게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세무문제의 대상 금액 및 표현문구 등을 수정하여 최종사례를 확정하였다.

4. 변수의 측정

가.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공인회계사유형과 회계감사수행여부이다.

우선 첫 번째 독립변수인 공인회계사유형은 응답자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계법인을 측정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속한 회계법인의 형태를 Big 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회계법인)과 개인감사반으로 구분하여 응답자에게 표시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회계감사의 수행여부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가정되어야 하는 처리변수(treatment variable)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할 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와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가정한 설문지에서는 “이 회사는 귀하가 속한 법인(혹은 귀하)에게 회계감사를 계속 받아 왔으며, 당년도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로 기술하였다. 이에 비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설문지는 “이 회사는 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계속 받아왔으며, 당년도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로 표현하였다.

나. 종속변수

본 연구는 각 사례에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대상회사(혹은 개인)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11점, 불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는 1점이 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한일철강의 사례에서는 “위의 가상적인 상황에서 귀하 하는 기계반품에 따른 손실을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세무조정할 것인지를 아래의 1~11사이의 한 곳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11=귀하가 이 금액을 손금으로 ‘확실히 인정하겠다’ (즉, (주)한일철강에게 유리한 세무조정)이며, 1=‘확실히 인정하지 않겠다’ (즉, (주)한일철강에게 불리한 세무조정)를 의미함”이라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측정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¹²⁾

다.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위의 독립변수 이외에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로 응답자의 세무조정경력과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여, 결과분석시 이들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12) 이는 기존연구에서 세무대리인의 공격성(aggressiveness)으로 표현되고 있다.

독립변수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는 Young(1985)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로 측정하였다: “귀하는 현재 복권을 한 장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권은 당첨될 경우 1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즉 0원). 이러한 복권의 가격이 5,000원일 경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최소한 몇 %가 되어야 이 복권을 구입하시겠습니까?”

라. 타 변수의 통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가상적인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결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중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닌 변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1) 고객의 중요성

해당 회계사(혹은 회계법인)에게 중요한 고객의 경우는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가상업체(개인)를 중요한 고객으로 한정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다. 즉 “당 업체(혹은 그 대표이사)는 그간 귀하에게 많은 업체를 소개하여 주는 등 귀하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로 기술하였다(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부록의 <설문지> 참조).

(2) 고객의 요구

세무의사결정과 관련된 기존연구에 의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처리를 요구하는 의뢰인의 요구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고객의 요구가 본 연구결과의 종속변수인 세무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뢰인을 공격적인 의뢰인으로 가정하였다. 즉 “의뢰인은 본 세무문제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의뢰인(혹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부록의 <설문지> 참조).

(3) 세무조사가능성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기존연구중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심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가상 사례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설문지에서 “최근 업계 전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 따라 당 기업(혹은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라고 표현하였다(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부록의 <설문지> 참조).

5. 설문지의 구성 및 배포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위험선호태도를 측정하였다. 이어서 가상적인 세 가지의 사례를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러 변수에 대한 처리(operationalize)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파악(manipulation check)하기 위한 항목을 측정하였다.

위의 설문지를 우선 Big 4의 모든 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당 20매 혹은 30매로 하여 총 10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각 법인의 세무부서의 책임자급에게 협조를 의뢰하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그리고 개인감사반은 서울에 소재한 개인감사반 전원을 대상으로 총 538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발송시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수하였다. 이에 총 638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IV. 자료 분석

1. 설문지 회수 및 응답자 현황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구 분		Big 4	개인감사반	합 계
배 포(매)		100매	538매	638매
회 수	매수(매)	85매	77매	162매
	회신율(%)	85.0%	14.3%	25.4%
부실응답 등(매)		1매	1매	2매
최종분석	매수(매)	84매	76매	160매
	분석율(%)	84.0%	14.1%	25.1%

실제 회수된 설문지 162매 가운데 응답이 부실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등의 2매를 제외한 총 160매를 최종 분석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대부분은 남자(89.4%)였으며, 평균연령은 만 39.3세, 공인회계사 근무경력이 11.6년, 그리고 세무조정 업무경력은 9.8년으로 비교적 긴 기간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설문지를 응답하는 데 평균 15분이 소요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를 각 독립변수의 수준별로 구분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각 사례별로 비교적 고르게 회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실제 설문지는 A3용지의 양면에 인쇄하여, A4크기의 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독립변수 수준별 회수 현황

감사수행여부 \ 형태	Big 4	개인감사반	합 계
회계감사 미수행	41매	34매	75매
회계감사 수행	43매	42매	85매
합 계	84매	76매	160매

2. 실험설계의 적절성 평가(manipulation check)

자료분석을 하기 전에 본 연구의 실험설계가 적절하게 처리(operationalize)가 되었는 가를 알기 위해, 응답자가 마지막 사례를 답한 이후에 설문지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질문을 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사례가 얼마나 애매하였는 지를 11점 척도(1-전혀 애매하지 않음, 11-매우 애매함)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를 평균이 6.20(표준편차 : 2.59)로 응답자들은 본 연구의 사례에 대하여 약간 애매하다고 느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응답자가 세무대리의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수준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가 세무대리인에게도 애매한 것으로 인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을 얼마나 주의 깊게 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언급된 회사나 개인이 응답자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었는 가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전혀 중요하지 않음, 11점-매우 중요한 고객). 측정결과 평균 8.66(표준편차 : 2.31)으로, 응답자는 본 연구 사례의 고객을 중요한 고객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설계는 비교적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종속변수의 기술적 통계량

본 연구의 응답자가 고객의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의 기술적 통계량은 <표 3>과 같다.

<표 3>의 기술적 통계량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약간 고객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으며, 각 사례별로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종속변수의 기술적 통계량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주) 한 강	6.57	3.36
(주) 아름다움	5.17	3.10
(주) 한일철강	7.66	3.22
전 체	6.45	2.32

주) 1-고객에게 불리, 11-고객에게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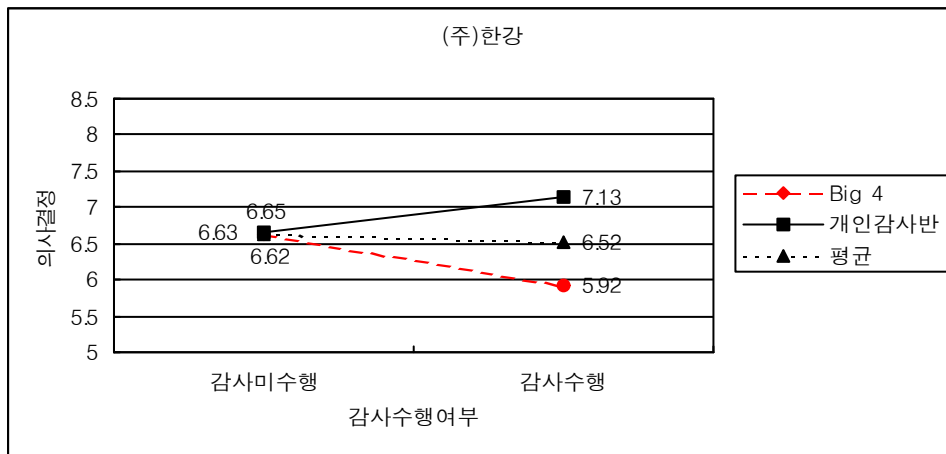
4. 예비분석

본격적인 가설검정에 앞서, 응답자의 응답성향을 알기 위한 예비분석을 하였다.

가. (주)한강에 대한 예비분석

이 사례는 종업원이 수령한 학자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었다. 공인회계사의 유형과 회계감사를 실시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응답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주)한강에 대한 예비분석



<그림 2>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는 감사수행여부에 관계없이 비슷한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Big 4 소속 응답자와 개인감사반의 응답자의 응답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감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집단의 응답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감사반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개인감사반의 경우는 감사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보다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Big 4 법인소속의 응답자의 경우는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보다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두 응답자간의 응답성향에는 차이가 크지 않아, (주)한강과 같은 종업원이 관련된 세무문제에서는 공인회계사유형이나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적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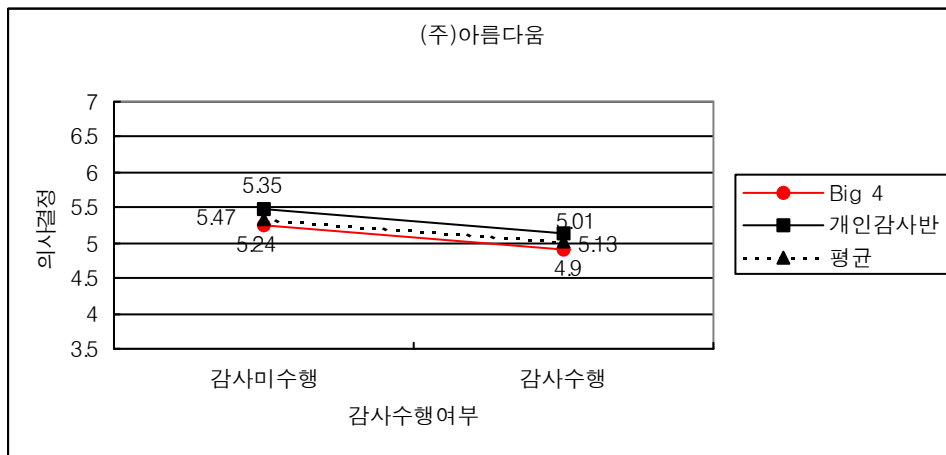
나. (주)아름다움에 대한 예비분석

(주)아름다움의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 회사로부터 받은 사외이사 거마비에 대한 세무문제이다. 이에 대한 예비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경우에 비하여 감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약간

공격적이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사인유형에 따라 응답양상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개인감사반의 경우가 Big 4 법인 소속 회계사보다 약간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이사가 관련된 개인적인 세무문제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유형이나 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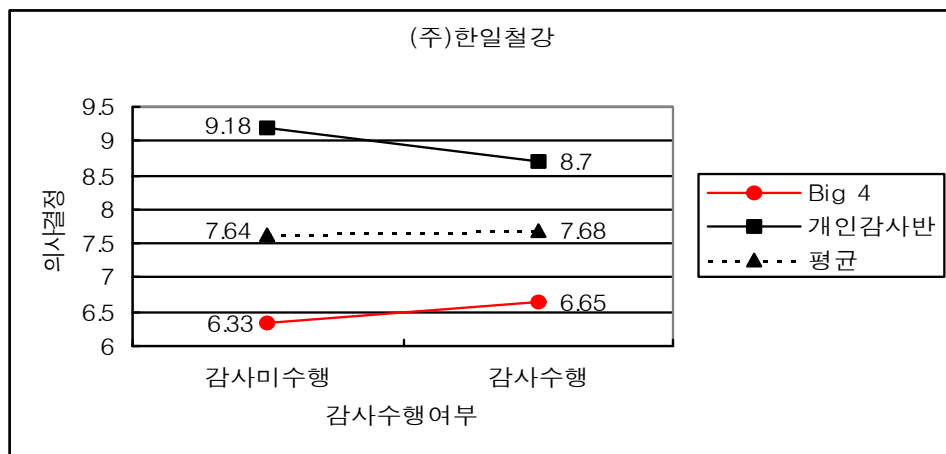
〈그림 3〉 (주)아름다움에 대한 예비분석



다. (주)한일철강에 대한 예비분석

(주)한일철강에 대한 사례는 회사만이 관련된 세무조정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비분석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주)한일철강에 대한 예비분석



<그림 4>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응답경향이 비슷하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응답성향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우선 개인감사만의 응답자가 Big 4 소속 응답자에 비하여 상당히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감사수행여부에 따라서는 응답성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회사만이 관련된 세무조정업무에 있어서는 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적지만, 공인회계사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5. 가설검정

본 연구는 두 독립변수—공인회계사유형과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수 이외에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정 업무경력,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태도¹⁴⁾를 선택하였다.

우선 가설검정에 앞서 본 연구의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수들간의 상관계수

구 분	종속변수(세무의사결정)			독립변수		통제변수	
	(주)한강	(주)아름다움	(주)한일철강	회계사유형	감사여부	세무대리경력	위험회피태도
(주)한강	—						
(주)아름다움	.376***	—					
(주)한일철강	.302***	.146	—				
회계사유형	.097	.036	.377***	—			
감사여부	.017	.054	-.007	-.041	—		
세무경력	.032	.113	.148	.402***	.051	—	
위험태도	.108	.025	.067	-.091	.005	-.168*	—

주1) ***와 **는 각 각 유의수준 1%와 5%에서 유의적임

<표 4>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회계사유형은 (주)한일철강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경우는 특별히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14) 응답자의 위험선호태도는 만일 응답한 확률이 50%보다 큰 경우는 위험회피유형, 50%이면 위험중립, 그리고 50%이하인 경우는 위험선호유형으로 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5〉 공분산분석 결과¹⁵⁾

Source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p값
(주) 한강					
주효과	회계사유형(A)	1	15.039	1.339	.249
	감사수행여부(B)	1	.354	.032	.859
상호작용효과	A×B	1	15.186	1.352	.247
공변량	세무대리경력	1	.091	.008	.929
	위험회피태도	1	16.937	1.508	.221
(주)아름다움					
주효과	회계사유형(A)	1	.000	.000	.996
	감사수행여부(B)	1	1.335	.137	.712
상호작용효과	A×B	1	.340	.035	.852
공변량	세무대리경력	1	16.581	1.698	.195
	위험회피태도	1	1.405	.144	.705
(주)한일철강					
주효과	회계사유형(A)	1	190.221	20.764	.000***
	감사수행여부(B)	1	.396	.043	.836
상호작용효과	A×B	1	7.980	.871	.352
공변량	세무대리경력	1	.164	.018	.894
	위험회피태도	1	18.170	1.983	.161
전체평균					
주효과	회계사유형(A)	1	35.574	6.860	.010**
	감사수행여부(B)	1	.691	.133	.716
상호작용효과	A×B	1	.317	.061	.805
공변량	세무대리경력	1	2.456	.474	.492
	위험회피태도	1	10.159	1.959	.164

주1) ***와 **는 각 각 유의수준 1%와 5%에서 유의적임

주2) 전체평균은 세 가지 사례의 응답에 대한 단순평균을 분석한 것임.

15)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수이외에 성별, 나이, 회계사경력, 응답소요시간 가운데 응답자의 세무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유의수준 1%(p값)	유의수준 5%(p값)
(주)한강	응답소요시간(.006)	—
(주)아름다움	나이(.006)	—
(주)한일철강	—	—
전체 평균	성별(.016)	나이(.036)

<표 5>에서 보듯이 (주)한일철강의 경우에만, 공인회계사의 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가설중 공인회계사유형에 따른 세무의사결정의 차이에 대한 가설인 연구가설 1은 (주)한일철강의 경우에만 채택이 되었고, 나머지 가설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주)한일철강의 경우 <그림 4>에서 보듯이 개인감사반에 소속된 응답자가 Big 4 회계법인에 소속된 응답자보다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와 세무서비스의 동시제공에 따른 세무의사결정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공인회계사유형에 따라 회사만이 관련된 세무문제인 경우(주)한일철강)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우선 공인회계사 유형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고객에 대해 Big 4 회계법인보다는 개인감사반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에, 개인감사반에 속한 응답자가 더욱 공격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비하여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조정 의사결정이 차이가 없는 것은, Big 4 회계법인은 세무부서와 회계감사의 부서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 세무부서는 회계감사와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감사반의 경우도 회계감사와 독립적으로 세무조정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는 재무제표자료를 분석한 기존실증연구의 결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Big 4 회계법인소속의 감사인이 개인감사반 소속 회계사가 보다 보수적인 결정을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Non-Big 4 회계법인과 Big-4 회계법인과의 보수주의 성향에 대한 백원선·유재규(2005)와 유사하다. 이들 연구에서는 보수주의 성향에 대한 측정치를 사용하여 Big 4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이 Non-Big 4의 피감사기업에 비해 회계수치를 보고함에 있어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파악되었다. 또한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론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최종학 등(2005)의 결론과 일맥상통한다. 최종학 등(2005)은 국내감사시장에서 특정 고객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가 크더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론을 낸 바 있다.¹⁶⁾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이용하여 세무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우선, 재무제표의 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업원에 대한 세무문제(주)한강의 경우)와 재무제표의 작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자문(주)아름다움)에서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공인회계사유형이나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앞의 예비분석에서 보았듯이 이 두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개인감사반의 응답자가 Big 4 회계법인의 응답자에 비하여 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PCAOB에서 금지하려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세무자문 제한조치를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도입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세무자문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

16) 물론 재무제표를 분석한 기존연구와 본 연구는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이 상이하기에, 이러한 결론의 비교는 추후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세무자문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무자문의 제공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정대상인 되는 회사만이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경우(주한일철강)에는 우선 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PCAOB에서와 같이 일상적인 세무조정의 행위는 회계감사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제공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즉 개인감사인 Big 4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에 비하여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Big 4 회계법인과 개인감사인의 업무처리 유형이 상이한 것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즉 Big 4 회계법인의 경우는 세무부서와 감사부서의 독립, 상급자에 의한 검토절차 등을 거치기에 세무업무를 할 때 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개인감사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검토절차가 없는 등의 이유로 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세무조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공인회계사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이 보다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기에,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공인회계사유형과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법규정이 애매한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Big 4 회계법인과 서울지역 개인감사인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가상의 세무문제를 세가지를 마련하였다. 즉 대상회사의 종업원과 관련된 세무문제,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세무문제 그리고 대상회사만이 관련된 세무문제에 대하여 응답자에게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첫 번째로 공인회계사유형에 따라 세무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개인감사인의 응답자가 Big 4 회계법인의 응답자에 비하여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감사인의 경우는 Big 4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에 비하여 공격적인 세무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개인감사인이나 정책당국은 이러한 공격적인 세무의사결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무업무에 대한 개인감사인 상호간의 검토방안이나, 사후에 공인회계사회에서의 철저한 세무조정사항 감리절차 등의 수립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개인감사인 자체적으로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한 세무의사결정을 할 필요를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독립변수인 회계감사수행여부에 따라 응답자의 세무의사결정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와 세무자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를 도입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해당회사 재무제표의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회계감사인이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최근 미국의 PCAOB에서와 같이 조치를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도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Big 4 이외의 회계법인(Non-Big 4)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Non-Big 4 회계법인은 업무처리 측면이나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관된 의사결정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감사반의 경우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회계사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보다 다양한 응답자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Big 4 회계법인의 경우도 응답자를 임의로 선정하였기에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응답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가상적인 세 가지 상황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보다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응답이기에 실제의 의사결정을 그대로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앞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국세청. 2006. “ATP(공격적 조세회피) 정책 토론회 개최”. 국세청정보참고자료. 2006.3.17.
- 박춘래 · 김종원. 2002. “세무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 89-109.
- 백원선 · 유재권. 2005. “감사인의 유형과 보수주의”. 회계와감사연구 제41권 : 241-260.
- 심태섭. 2004.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3권 제1호 : 297-320.
- 이환근. 1998.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험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최종학 · 박종일 · 전규안. 2005.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1호 : 121-154.
- 한국회계연구원. 2005. E-KASB Club News 267.
- Ashbaugh, H., R. LaFond, and B. Mayhew. 2003. Do Non-Audit Services Compromise Auditor Independence? Further Evidence. *The Accounting Review* 78 (3) : 611-639.
- Ayres, F. L., B. R. Jacson, and P. S. Hite. 1989. The Economic Benefits of Regulation : Evidence from Professional Tax Preparers. *The Accounting Review* 64 (2) : 300-312.
- Carnes, G. A., G. Harwood, and R. Sawyers. 1996. The Determinants of Tax Professionals' Aggressiveness in Ambiguous Situations. *Advances in Taxation* 8 : 1-26.
- Cuccia, A. D. 1995. Diversity in the Tax Preparation Industry and Potential Consequences for Regulation : Linking Attitudes and Behavior. *Advances in Taxation* 7 : 73-98.
- Louis, Henock. 2005. Acquirers' Abnormal Returns and the non-Big 4 Auditor Clientele Effec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0 : 75-99.
-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 2005. PCAOB Release No. 2005-020.
- Roberts, M. L. 1998. Tax Accounts' Judgement/Decision-Making Research : A Review and Synthesis.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 (1) : 78-121.
- Young, S. M. 1985. Participative Budgeting : The Effects of Risk Aversion and Asymmetric Information on Budgetary Slack.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3 (2) : 829-842.

부록 : 설문지(감사수행경우)

1. (주)한강

한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甲씨의 장남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甲씨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주)한강으로부터 1년간 학비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주)한강은 총 20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수령자 총 20명중 10명만이 (주)한강 종업원의 자녀였으나, 나머지 10명은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예규에서는 사용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만을 특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장학생을 추천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경우처럼 모든 장학금 수령자가 당해 업체 근로자의 자녀가 아닌 경우, 위 장학금이 甲씨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강의 경리담당자는 위의 장학금 전액을 甲씨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 등을 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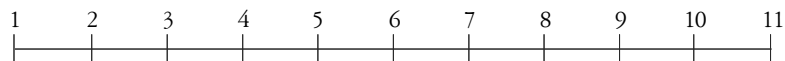
(주)한강은 귀하에게 당년도의 세무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주)한강의 대표이사는 그간 귀하에게 많은 업체를 소개하여 주는 등 귀하에게는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주)한강의 대표이사는 세무대리인인 귀하에게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리담당자의 생각대로 납세자인 甲씨에게 유리한 세무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강은 소비성 서비스업종이라 최근 (주)한강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한강은 귀하에서 회계감사를 계속 받아왔으며, 당년도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한강에서 받는 회계감사수수료는 귀하가 속한 법인(혹은 귀하)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귀하는 위의 장학금을 甲씨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하실 것인지를 아래의 1~11사이의 한 곳에 표시(O 또는 V)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11=귀하가 위의 장학금을 甲씨의 과세소득에서 “확실히 제외하겠다”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른 세무조정)이며, 1=“확실히 포함시키겠다” (회사의 요구와는 반대인 세무조정)를 의미함)

확실히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겠다
(甲에게 불리)

확실히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겠다
(甲에게 유리)



** 이하의 사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위의 사례와 유사함 **

2. (주)아름다움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는 丙씨(주아름다움 대표이사)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경기도 광주 소재, 여의도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임)의 사외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丙씨는 당년도에 총 10회 이사회에 모두 출석한 바 있습니다. 丙씨는 이사회 참석차 실제로 회사에 내사할 경우에만 거마비로 “1회당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연간 총 1,000만원), 이외의 별도의 보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마비는 인근 비슷한 규모의 회사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세법 예규에서는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예규에서는 비상근임원이 급여이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 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수준인 丙씨의 거마비에 대한 처리는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한일철강

丁씨가 운영하는 (주)한일철강에서 구입한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매번 제작사와 함께 수리를 해 보았지만 완전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기계를 제작사측과 협의하여 당 기계의 취득가액(3억6천만 원)중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잔금(1억1천만 원)과 상계하기로 하고 당 기계를 제작사가 회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차) 미지급금	110,000,000	(대) 기계장치	36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80,000		
잡손실(기계반품손실)	169,920,000		

기계를 반품한 지 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주)한일철강에서는 반품한 기계를 대체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입의사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현행 관련 세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설비가 노후되었거나 기능의 상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유로 기계를 대체한 것으로 인한 경우,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예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법은 위 사례와 같은 기계반품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주)한일철강의 경리담당자는 위의 손실을 모두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The Effects of Auditor Types and Auditing Service on Tax Reporting Decision

Shim, Tae-Sup*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1) types of auditors (Big 4 vs. sole proprietor) and (2) auditing service affect tax reporting decision of a CPA in Korea. This study used 2×2 experiment on Korean CPAs using questionnaires. Each respondent was presented with three ambiguous tax scenarios. For each scenario, the subjects were asked to indicate how they would report the tax issue in the manner favorable to their clients. Based on the data analysis, first of all, the types of auditor have effects on tax reporting decision, and generally the CPAs who worked as sole proprietors tended to make tax decisions more favorably to their clients than the CPAs in the Big 4 firms. In one tax scenario, th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means that the measures to lessen the aggressiveness of some CPAs -especially sole proprietors- in tax reporting are needed. However, the effects of auditing service on tax reporting decision were not found.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Korean regulators should be circumspect in adopting the rules that forbid auditors to provide tax services to their clients.

<Key words> tax, tax preparer, non-audit service, CPA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Dankook University